

#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786
------	-----

2023.07.04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홍국표 의원(찬성자 30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다. 상정결과 :

####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】

-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7.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홍국표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

따라 “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”를 폐지하며,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대상 경진대회 개최 근거 신설 등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정의규정 삭제(안 제2조)
-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특례규정 삭제(안 제10조 삭제)
-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(안 제13조 삭제)
-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에 대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 근거규정 마련(안 제15조)
- 한글 맞춤법 등에 따른 조문상의 표기 정비(안 제5조, 제14조, 제15조, 제17조, 제20조, 제21조)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관련 조례의 폐지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적금융 관련 규정과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, 혁신금융서비스 경진대회의 근거와 보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,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됨.

#### 나. 주요 개정사항 검토

##### (1) 사회적금융 관련 조문의 정비(안 제2조제10호 및 안 제10조)

-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(안 제2조제10호)와 고용자금 지원 특례규정을 삭제함(안 제10조)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“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”이란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의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</p> <p>11. (생략)</p> <p>제10조(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특례) 시장은 서울에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한도는 별표와 같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 &lt;삭 제&gt;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 &lt;삭 제&gt;</p>

- 서울시는 금융기관의 종합적인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.
-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금융기관은 금감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수집·관리에 어려움이 있고, 조례에 따른 지원실적도 전무함.
-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관리가 어렵고 실적도 없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조치임.

(2)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(안 제13조)

- 개정안은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산하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13조)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
- 조례제정 당시에는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한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(7명 내외)로 구성된 ‘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’ 규정을 마련함.
- 그러나 ‘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와 ‘사업 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의 중복심사와 관계법령 위반 문제가 제기 되면서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(2017.7.13.)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됨.
- 사문화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후속 입법 조치는 필요하나, 관련 조문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수년간 방치되어 온 바 추후 관계 법령이나 조례의 제·개정 사항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.

(3)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관련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3항 신설)

-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금융 경진대회의 개최와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.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) ①~② (생 략) ③ <신 설>	제15조(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) ①~② (현행과 같음). ③ 시장은 제2조제4호의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우수자에게 시상금, 사업비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- 서울시는 2006년부터 해마다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‘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’를 개최해왔고, 2022년부터는 서울디지털금융페스티벌로 개편하여 금융정책 행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함.
- 올해 개최되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은 금융감독원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, 국내·외 민간 핀테크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주요 행사로 계획하고 있음.
- 2024년부터는 핀테크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사업추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## 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#### 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### 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홍국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8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  
발 의 자: 홍국표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경기문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신복자, 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병운, 이상욱, 이숙자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황철규 의원(30명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“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”를 폐지하며,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대상 경진대회 개최 근거 신설 등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사회적금융 수행 기관 정의규정 삭제(안 제2조)
- 나.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특례규정 삭제(안 제10조 삭제)
- 다.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(안 제13조 삭제)

- 라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에 대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 근거규정 마련(안 제15조)
- 마. 한글 맞춤법 등에 따른 조문상의 표기 정비(안 제5조, 제14조, 제15조, 제17조, 제20조, 제21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

##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에 대하여 사업용”을 “에 사업용”으로 한다.

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사후관리)”를 “(보조금의 사후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용 등 관리”를 “사용·관리”로, “그 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자에 대하여”를 “자에게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2조제4호의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우수자에게 시상금, 사업비 및 기타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자에 대하여”를 “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등에 대하여”를 “에게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자에 대하여”를 “에게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등에 대하여”를 “등의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“<u>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</u>”이란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</p> <p>11. (생략)</p> <p>제5조(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<u>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특례) 시장은 서울에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한도는 별표와 같다.</p> <p>제13조(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)</p> <p>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) ① ----- ----- <u>사업용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
필요한 경우 7명 내외의 금융  
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  
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(이  
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 
수 있다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  
년으로 한다.

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 
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  
한다.

제14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이  
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 
적정한 사용 등 관리를 위하여  
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 
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 
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 
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이 해당  
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 
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5조(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  
치 환경 조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 
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  
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  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보조금의 사후관리) ① --

-----

---- 사용·관리-----

-----

-----

-----

소속 공무원-----

-----

-----
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  
치 환경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자에게 -----

----- 범위-----

-----.

<신 설>

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

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,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단,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20조(표창) 시장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21조(행정지원 등) 시장은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신

③ 시장은 제2조제4호의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우수자에게 시상금, 사업비 및 기타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자에게 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등에게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표창) -----  
----- 자  
에게 -----  
-----.

제21조(행정지원 등) -----  
-----

규 창업하거나, 외국 금융기관  
이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 
경우에는 인·허가 등에 대하여  
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 등의 -----  
-----.